



# 암호화폐(가상자산)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 필요



## 가상화폐 혁신제도, 기술연동제 도입 필요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금지 정책의 관점에서 규제를 반대한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미래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진흥과 규제에 대한 의미 있고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오 박성준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kcrypto1@naver.com

‘가상화폐’는 투기 및 자금세탁·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발생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교한 기술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스타트업 중소업체 진흥 및 육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흥준영  
✉ (사)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 kfinnet1230@gmail.com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 반대 관련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배경 및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암호화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찬성하는 분들은 본질은 제외하고 규제의 필요성만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이며, 현재도 정부의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를 둘 덩어리로 인식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고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이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암호화폐 규제 찬성·반대 이전의 문제이다.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암호화폐의 실체와 내재

## I. 가상화폐 취급업소 유형

### 1. 가상화폐 트레이딩 취급업소

중앙화 DBMS(mysql등)와 App/Web 서버연동방식으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코인(가상자산) 트레이딩이 그 목적이며, 고객에게 별도의 DEX지갑과 가상자산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업소 소유 코인과 고객 투자코인의 전자지갑 미분리 통합계정관리 문제점과 더불어 업소의 상당한 담보금 내지 보험 시스템의 마련조차 없는 운용체계로 사실상 고객 자금에 대한 배임 횡령의 위험은 물론 외부 해킹·먹튀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업소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화폐 취급업소, 빗썸, 업비트, 한빛코, 코인원 등이 해당된다.

#### 현실태 분석

- 가상자산의 실제 구매자 직접 보관식 판매업 방식이 아니며 온라인 다중 네트워크 기반의 트레이딩(매도수) 방식의 고위험 투기업·도박업과 사실상 동일
- 불법적인 자금세탁처(최근 라임, 옵티머스)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 DEX(탈중앙화 가상자산) 취급업소

탈중앙화된 전자지갑과 가상자산을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 서비스 하는 P2P(Peer to Peer)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전문 취급업소에 해당된다.

- 퍼블릭형으로 무차별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취급하는 업소형태① (연동 사례로 최근 부동산 대출 투기성 자금의 세탁 유입사례 매우 클 수 있음)

1) 문제점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추적이 어려운 불법적인 해외송금 환치기 각종 자금세탁처(최근 라임, 옵티머스)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 CIA에서도 북한 송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음.



적 가치가 없다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여부 논쟁에 대해 우리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 시대의 아픈 경험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는가? 지적재산권이 실체가 있는가?의 논쟁이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지금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 역행적인 논쟁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경쟁력의 현실이 어떤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실체가 있는지 메타버스가 실체가 있는지 자문해봤으면 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실체가 없는 가상현실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년 모른다는 말인가?

### 두 번째 내재적 가치의 논쟁이다.

첫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의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 인공지능의 내재적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경제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그런데 참 황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였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상이하다면 토론의 의미는 없지 않은가?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3가지 특성은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블록체인(탈중앙화/분산화/P2P)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을 암호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현재의 자산을 디지털로 표현한 것)의 가치 표현이라는 것이다.

#### 분석 - 제도개선 측면

- 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시키고 기술력이 우수한 DEX 스마트업의 프라이빗 형태로 양성화 공공선도형 비즈니스로 유도하는 정책대안제시가 필요한 분야로 볼수 있음.

#### 3. DEX 프라이빗 - DeFi CeFi 기술 전문업체

프라이빗형으로 코인(가상자산)은 취급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스마트 계약처리 업무와 오라클문제(온체인, 오프체인, 스마트계약)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 분류된다.

- 금융기관, 지역가상자산, 기술거래, 무역금융, 선거/공공행정/의료문서 등의 탈중앙화 공유·협업을 위한 오라클(온·오프체인화) 업무개발 용도로 확대 가능성 큰 분야

- 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시키고 기술력이 우수한 DEX 스마트업의 프라이빗 형태로 양성화 공공선도형 비즈니스로 적극적인 유도정책이 필요한 분야임.
- 혁신의 연결 도입이 요구되는 국가 공공선도 은행 대·중견기업이 관련 기술력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중소벤처에 대한 적극적이고 거대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법적·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분야임

#### 분석 - 제도개선 측면

- 팬더믹 이후 대한민국의 초혁신을 재점화시킬 차세대 성장 동력의 중점 분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융합 연결한 기술력을 최대한 진흥 및 선도 육성 분야
  - 단기간 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집단 출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임.

그러나 규제 찬성/반대 논쟁에 앞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보다도 암호화폐의 필요성 여부이다.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하는 이원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

블록체인은 인터넷(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하지 않는가?)과 같은 기반기술이다. 이는 블록체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경제를 우리는 ‘인터넷 경제’라고 하듯이,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창출되는 경제를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라고 이야기 한다. 아마도 새해 첫 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창한 ‘프로토콜 경제’도 블록체인 기반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경제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필자가 보기에는 프로토콜 경제와 암호경제는 동일한 경제모델인 것 같다) 중요한 사실은 프로토콜 경제에서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가 ‘프로토콜 경제’를 탁견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핵심은 ‘프로토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 세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암호경제/프로토콜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암호경제의 접두어 암호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미래는 암호화폐 대중화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전면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강력

#### 4. 코스닥과 다른점

국내 상장기업의 증권을 대상거래로 하여 국내 기업에 자금 유입 선순환을 돋는 코스닥과는 달리 99% 이상 해외 코인(가상자산)을 취급하므로 국내 창업 중소 벤처기업들에게는 자금유입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요인은 일절 없으며 코로나 팬더믹 시기를 노려 헤지펀드 집중유입으로 버블형 초급상승의 요인이 작동, 최근 거래자금의 상당한 액수가 국내 서민 자금투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계속 방치 시에는 국내 서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임.

---

#### II. 가상화폐의 명칭 정의

코인(가상화폐) 명칭규정의 근거로는 화폐는 국가, 정부 발행 신뢰의 기반이므로 화폐명칭은 부적절하고, 자산으로 규정하기에는 외환, 금 등의 대체자산의 10%를 차지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도박, 고위험 투기 자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통화기능은 전혀 없으므로 ‘통화’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명칭은 ‘암호+투기형+가상자산’으로 ‘암호투자’ 내지 ‘암호토큰’ 정도가 적절한 명칭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록체인 산업 분류 중 제외되어 있는 암호화폐 산업

58211-1	58212-1	58221-1	58222-1	62010-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62090-1	63112-1	63999-1	63999-2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del>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del>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출처: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18-269호(2018.7.27)

---

### III. 가상화폐의 이용목적과 폐해 및 문제점

가상화폐의 이용목적은 ① 불완전 투기상품 ② 자금세탁·조세회피 수단 이외에는 단연컨대 주요 사용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세가지 이용목적은 사실상 가상화폐의 폐해 원인과 동일하다.

#### 1. 불완전 투기형 상품

단 하루 만에도 가상화폐의 급상승과 급하락의 원인과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일정한 예고나 예측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는 특정 가상화폐 해당 종목의 개발업체의 역량과 기술력, 제품의 완성도조차 전혀 반영되거나 비례하지 않으며 사실상 무관하게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상품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가상화폐를 심각한 불완전 상품자산으로 보는 근거로는 최근 대신증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테슬라 주식의 가격이 대략 최대 7배수 급상승 했으나 이를 “버블현상”으로 보지 않는 점은 테슬라 주식의 상승요인에는 선도형 전기자동차 기술력과 더불어 최신 “자율주행차” 기술력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갖추었으나 가상화폐는 그러한 일정한 루틴이나 공식을 따르지 않으며 금융자산을 대체하려면 외환 내지는 금의 10%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 사례보고조차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규제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고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 혁명' 이후 '블록체인 혁명' 이란 시대의 전환점에서 대한 민국의 가장 빼아픈 과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 전환의 시작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암호화폐거래소(법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및 매매업)의 벤처기업 인증 대상 제외 철회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아래와 같이 10개 분야로 나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록체인 산업 분류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암호화폐 산업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은 명백하나, 블록체인(암호화폐 포함)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아직도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 암호화폐 생태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자 한다.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금지 정책의 관점에서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물론이고, 신사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

## 2. 자금세탁·조세회피수단

단 하루 만에도 수백만원~수천만원씩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각 국가 화폐나 달러처럼 정상적인 기축통화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불법적인 성인물 유통 배포 등의 사건, 이르바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 심각한 불법과 음성적인 거래 자금의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측면, 즉 탈중앙화, 보안 PV(개인프라이버시)와 같은 익명성 강화방식이 OTA(One Time Address)와 같은 독특한 신기술적 보안 은닉성이 강화된 모네로와 같은 가상화폐 등의 출현으로 더욱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상화폐는 고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가, 즉 국내 여건상 조세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해결책 #1 정교한 기술연동제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대상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익금의 선순환 구조 마련</li> <li>· 취급업소 수익금 50% → 국내 블록체인 기술스타트업에 대한 이익금 투자유입 선순환 구조 마련이 주요대안임❷</li> </ul>



#### (1) 가상자산 트레이딩 취급업소 대상의 기술연동제

- 등급에 따른 가상자산 취급 거래 금액 한도 조절 (반기 단위)
  - \* 거래 폭증 시 취급업소 단위 서킷 브레이크 작동
- 취급업소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운용
  - \* ISMS로는 통제불가
- 트레이딩이 목적이므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취급업소의 자기 자본력을 담보력 검증 및 한도로 1일/매주/월단위 취급 등급거래방식의 반기별 거래 승인을 조절하는 제도책 마련이 필요
- 해킹, 먹튀 방지 기술 확보 마련 여부에 근거한 거래 등급 조절③
-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업소는 SaaS(Soft as a Service) 형태로 금융사/보안업체에서 트레이딩 시스템을 별도 운용 관리

#### (2) DEX(탈중앙화 가상자산) 취급업소 대상 기술연동제

- 해킹 보안 문제는 사실상 없으나 소위 먹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 자산을 보관 중인 전자지갑의 개인(암호)키는 별도분리 금융기관/등록된 보안기업이 보관토록 조치해야 함.
- KYC/AML 노출이 어려운 불법 해외송금, 사모펀드 등 중간 마켓의 자금세탁, 탈세 등의 문제에 대한 투명한 원장 접근 및 관리 당국의 실시간 접근 확인이 가능한 AML(이상징후 감지) 의무화

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암호화폐 산업도 다른 산업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미래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진흥과 규제에 대한 의미 있고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의 진흥이 우선인가? 규제가 우선인가의 논쟁을 말한다.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의 최소한의

진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 찬성/반대 논쟁에 앞서, 현재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존재하는지 물고 싶다.

#### 해결책 #2 기술스타트업 중소업체 진흥 및 육성제도

##### (1) 스타트업 연구개발 및 실증 특구 - 지자체 단위

- R&D 아이템 기술력 플랫폼 연결 선정 창업 중소업체 5년간 연구 특구 입주
- 1차 50억원 이내 가상자산 (STO) 기술개발비 플랫폼 연결 공모 허가
- 2차 기술개발 80%이상 검증 후 200억원 이내 M&A 플랫폼 연결 자금 공모 허가

##### (2) 기업가 정신강화 및 기술규제 사업화 실증제도

- 은행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창업가 육성제도 활성화 지원 및 중간회수시장(미들마켓) 육성 제도④
- 은행의 예대 마진을 벗어난 기술거래 육성 사업 및 기술 주도 M&A 예산 매출 10% 이상을 추진토록 “벤처자금의 이용가능성” 금융 질적지표 개선책 제시안 마련